

## 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제 목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주요내용 재알림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16. 9. 28. 시행되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주요 내용을 재차 알려드리오니, 전 직원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안내하시어 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내용

- 법률 적용 대상
- 부정청탁의 금지
- 금품등의 수수 금지
- 위반행위 신고·처리 및 신고자 보호·보상
- 징계 및 벌칙

붙임 :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(국민권익위원회 제공) 1부. 끝.

## 교육부장관

수신자: 공직유관단체, 대학법인, 대학원대학법인, 사립대학교, 사립전문대학, 사이버대학법인, 사이버대학, 전공대학, 기술대학, 각종대학

주무관 이경희

전결 08/12

행정사무관 이홍복

협조자

시행 민원조사담당관-4887 (2016-08-12)

접수 인재개발팀-00129 (2016-08-16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

/ www.moe.go.kr

전화 044-203-6442 전승 044-203-6093

/ dia7942@moe.go.kr

/ 공개

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